#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1419

2020년 6월 19일 교 육 위 원 회

# Ⅰ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4월 3일, 문장길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
## 3. 상정일자

○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(2020년 6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장길 의원)

## 1. 제안이유

- 정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 며, "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"을 통해 사무실에서의 1 회용품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,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등의 정책을 시 행해 오고 있음.
- 이와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를 타 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,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

제공 제한과 이를 위한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려고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하렴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이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행사 및 회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 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제1항)
- 마.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 정 함(안 제7조)

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0년 4월 3일 문장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19호 로 발의되어 2020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감축 시책에 발맞추어 서울시교육 청 및 직속기관, 학교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위한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'자원재활용법')」제2조 제15호에 따르면, '1회용품'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·접시·용기, 1회용 나무젓가락, 1회용 수저·포크·나이프, 1회용 봉투·쇼핑백 등1)을 의미합니다.
- 1회용품 사용은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로, 2018년 유엔환경계획(UN Environment Programme)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이 환경 및 건강, 사회와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는 등 세계 각국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²).

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식기류(포크, 숟가락, 접시, 빨대 등), 면봉, 풍선막대의 시장출시를 금지하고, 미국은 플라스틱식기류, 빨대, 젓는 막대의 사용을 제한하며 주·도시별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재 세계 각국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, 규

#### <u>1회용품</u>(제5조 관련)

- 1. 1회용 컵·접시·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)
- 2. 1회용 나무젓가락
- 3.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- 4. 1회용 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- 5.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)
- 6. 1회용 면도기·칫솔
- 7. 1회용 치약・샴푸・린스
- 8. 1회용 봉투·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9.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)
- 10.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
- 2) UNEP(2018). Single-Use Plastic: A Roadmap for Sustainability.

<sup>1) 「</sup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

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([표 1] 참조).

[표-1] 세계 각국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규제 현황3)

국가	내용
EU	• 식기류,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 추진 - 2022년까지 식기류(포크, 숟가락, 접시, 빨대 등), 면봉,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
미국	• 주/도시별 <b>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</b> 및 <b>플라스틱 식기류, 빨대, 젓는 막대</b> 의 사용 제한 추진 -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, 빨대 사용 금지(하와이)
캐나다	• 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 추진(식품용기, 빨대, 비닐봉투 등) - 2018년 PS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금지,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, 빨대,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
영국	• 2020년 <b>빨대, 젓는 막대, 면봉</b> 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추진
프랑스	• 2020년 <b>1회용 플라스틱컵, 접시 판매 금지</b> 시행 예정
스페인	• 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
대만	• 2016년 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, 2030년 모든 상점에서의 <b>1회용 식품용</b> 기,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추진

○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2018년에 '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'을 마련하여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 여 각 시·도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.4)

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'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'을 추가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(컵, 봉투 등) 사용을 35% 감축하고,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([표-2] 참조).

<sup>3)</sup> 환경부외 관계부처 합동(2019.11.22.). '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' 참조.

<sup>4)</sup> 환경부 공문(2018.06.25.). '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요청'.

## [표-2] 2019년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주요 과제5

분야	중점과제
	• 1회용 컵 사용 감축 및 회수 체계 구축
	• 포장·배달의 1회용 식기류 등 사용 감축
1회용품 줄이기 대상   단계적 확대	• 장례식장 등 규제 적용 업종·시설 확대
	•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의 단계적 확대
	• 빨대 등 현행 비 규제 1회 용품 사용 감축
플라스틱 포장재 등	• 택배, 신선배송 등 운송 포장재 감축
줄이기	• 제품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근절
	• 1회용품 생산업계 이행 지원
이행 기반 강화	• 공공부문 역할 강화
	• 전 국민 참여 촉지

○ 특히, 환경부의 2019년 '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'에서는 공공부문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서 공공기관이 환경부의 단순 지침이 아니라 훈령 및 예규, 조례 제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([표-3] 참조).

## [표-3]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관련 공공부문 역할 내용 및 규정 변화6

구분	기 존	개 선
주요 내용	사무실, 회의, 야외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감축	정부·지자체 소관 축제, 문화·편의시설 등으로 확대
규정	단순 지침(환경부)	부처별 훈령·예규, <b>지자체 조례</b>

○ 따라서 동 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기반으로,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<sup>5)</sup> 환경부외 관계부처 합동(2019.11.22.) '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' 참조.

<sup>6)</sup> 환경부외 관계부처 합동(2019.11.22.) '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' 참조.

### 나.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

- 1) 조례안의 체계
-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,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을, 본칙 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, 실태조사(안 제5조), 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(안 제6조), 교육·홍보(안 제7조)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에 있어서 「자 치법규 입법실무」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2)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검토(안 제4조)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 하지 않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서 계획의 내용에 '추진목표 및 추진방향', '유관기관과의 협력', '교육· 홍보의 활성화'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8년에 '「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」추진 계획: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(이하 '1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')'를 시행하면서, 가정·학교·기관의 자발적인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서울교육 공동체가 환경 폐기물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.

동 계획에는 '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홍보 강화', '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', '1회용품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', '학생중심 환경 지 킴이 녹색실천단 운영' 등이 포함되어 1회용품 줄이기 관련 '실천' 운동에 중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([표-4] 참조).

[표-4] 2018년 서울시교육청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사업 내용

과제	추진 내용
	• SNS 홈페이지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
①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	• '1인 1머그컵 운동' 공모사업 추진
홍보 강화	•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동아리 운영
	• '1회용품 없는 날' 캠페인 추진
	•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개시 및 준수
②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	• (본청) 직원용 머그컵 구입 및 우산빗물제거기, 식기세척기, 살균기 등 설치
	• (본청) 꿈틀 카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컵보증제 추진
③ 1회용품 줄이기 아이디어	•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
공모전 운영 	•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연계 지도자료 개발
	• 단위 학교별 환경지킴이 녹색실천단 운영
④ 학생 중심 환경지킴이 녹색실천단 운영	• 플라스틱 수거 day, 환경보증금(에코머니)제 운영
	• 플라스틱 수거량 맵인 스마트폰 앱(application) 개발·보급

- 이후,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및 2020년에 '1회용품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'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환경교육 차원에서 관련 사업 을 시행 중입니다.
  -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2019년에 환경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%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'1회용품 줄이기'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.
-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 제4조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보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바람 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-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 수립된 「생태전환교 육 중장기('20~'24) 발전 계획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내

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'기본계획' 및 '시행계획' 수립을 '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'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5146, 2020.4.10.).

○ 그러나 환경교육은 '환경교육진흥법'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며 '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'은 '자원재활용법'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법률 제정 및 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,

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「생태전환교육 중장기('20~'24) 발전 계획」에서 1회용품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

○ 또한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각 시·도교육청에 「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요청」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서 마련한 '공 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'을 준수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각 기 관이 자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7),

환경부에서도 '환경교육 종합계획'을 수립하면서 이와 별도로 '1회용품함께 줄이기'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실천 중심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교육 계획과 별개로 1회용품 사용 및 제 한에 대한 중·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 진되는 국가차원의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바,

<sup>7)</sup> 환경부(2018). '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 요청'

<sup>2.</sup>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등 문제의 재발장지를 위하여 제37차 국 정현안점검조정회의(5.10일)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'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'을 발표(관계부터 합동) 하였습니다.

<sup>3.</sup> 동 대책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 적으로 1회용 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<u>각 기관은 자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</u>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여 친환경적인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동 조례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3)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(안 제5조)
-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감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환경부는 2019년에 '1회용품 함께 줄이기' 계획을 발표하면서 1회용 컵, 1회용 접시·용기 등 주요 1회용품에 대한 2018년 사용량을 밝히 고 2019년 계획 시행에 의한 감축량도 예상하여 제시하였습니다([첨 부자료 2] 참조).
  - 이와 같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기본계획은 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바, 교육청 차원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량 및 감축량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-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생의 경우 1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안 제5조에 대해 "삭제"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5146, 2020.4.10.).
- 그러나 동 조례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

됩니다.

이와 더불어 동 조례안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대상 은 학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전체 구 성원에 적용되는 것인바.

동 조항에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'실태조사' 실시를 규정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4) 교육·홍보에 대한 검토(안 제7조)
- 안 제7조에서는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과 관련한 교육·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환경부가 2019년에 발표한 '1회용품 함께 줄이기' 계획에 따르면, 현재부터 2022년까지 '1회용품 줄이기'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규제 품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'1회용품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'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회용품 줄이기 실천동아리 운영, '1회용품 없는 날'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1회용품 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 니다.
- 이에 동 조항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계획을 기반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-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이유로 안 제7조의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기후위기, 환경오염,

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5146, 2020.4.10.).

- 그러나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교육 문제와는 별개로 '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'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따라서 동 조항의 '교육·홍보' 내용도 기후위기, 환경오염 등 전반적인 환경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'1회용품 줄이기'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하 는 것이 타당하며, 환경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및 「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」에 따라 별도 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,

동 조항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·홍보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한편 참고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는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바8), 이에 따른 동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<sup>8)</sup> 환경부(2020.1.31.)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Ⅲ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₩ 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육행정기관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 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- 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3. "1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 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
  - 2. 유관기관과의 협력
  - 3. 교육·홍보의 활성화
  - 4.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)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교육·홍보) 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·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